교통사고 발생시 현장 처리요령(V)

이번 호에는 교통사고 발생시 현장처리요령의
마지막 순서로, 가벼운 접촉사고시나 사고현장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
상대방이 억지주장을 하는 경우의 대처요령에 대해서 알아본다.

가벼운 접촉사고시 합의요령

1.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쉽게 지나치지말고 현장에서 바로 합의할 수있으면 합의서를 쓰고 합의한다. 이런 경우 합의서에 어떤 양식이나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예시)

합 의 서

(갑) 서울 32다 1234
홍길동
(TEL : 1234-5678)
(을) 서울 23다 1234
김갑돌
(TEL : 321-1234)

2002. 3. 2. 12:30
면목동 ○○극장 앞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갑 : 홍길동 사인
을 : 김갑돌 사인

2. 현장에서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경찰서에 신고하면 범칙금 또는 벌점 등 행정처분으로 불이익을 받게되므로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보험금 할증의 이중적인 불이익을 보기 때문이다.

3. 가벼운 접촉사고라 하더라도 합의서는 작성하여 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양식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므로 메모지에도 좋고 아무 종이에라도 2부 작성하여 하나씩 갖는다 금액은 써도 되고 안써도 관계없다.

4. 내용에는 반드시 서로간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과 쌍방간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있어야 하며 서명에는 자필 사인도 괜찮고 무인(손가락 도장)도 관계없다.

가벼운 접촉사고의 보험처리

가벼운 접촉사고로 사고현장에서 연락처만 알려주고 헤어졌는데 아무 연락이 없기에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상당한 오랜기간이 지난후에 피해차량에게서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해 온 경우 피해금액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보험회사에 접수하면 보험처리가 된다. 우리나라 보험의 경우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2년으로 되어있기 때

문에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보험처리 될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나중에 보상을 요구하면서 사람이 다쳤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사고당시 경찰에 신고해 두지 않았다면 뺑소니 차량으로 처벌을 받게되는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물론 뺑소니 사고라 하더라도 보험처리는 된다.)

따라서 아무리 가벼운 접촉사고라고 하더라도 피해차량이 조금이라도 무리한 요구를 해오는 경우에는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받아두든지 또는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여 후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올바른 교통사고 처리방법이다.

소액사고의 보험회사 활용방법

소액사고의 경우 일단 보험으로 접수하여 처리하고 보험처리가 종결되었을 때 보험처리된 금액을 확인해 보고 지급금액이 소액이면 그 지급 보험금을 보험회사로 입금시키면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되어 보험금 할증의 손해를 보지 않는다.

사고현장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자동차를 현장에 둔채 운전자 쌍방간에 시비를 벌이게 되면 법적 제재를 받게된다.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후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5분이 넘도록 자동차를 사고현장에 둔채 시비를 벌이느라 다른 후속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게되었다면 5~7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가벼운 접촉사고가 난 경우에는 5분이내에 카메라, 스프레이 등을 이용하여 사고현장을 보존한 다음에 신속하게 자동차를 도로변으로 이동시켜 교통질서를 회복시킨 다음에 운전자 쌍방간에 시비를 가려도 된다.

상대방이 지나치게 큰소리를 치거나 억지 주장을 하는 경우의 대처 요령

교통사고 발생후 운전자 쌍방이 사고현장에서 큰소리를 내며 멱살을 잡거나 삿대질을 하면서 싸우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최근에는 많이 없어졌지만) 특히 상대방이 여자이거나 조금 약해 보인다 싶으면 더욱 기세 등등하게 나오는데 당하는 쪽 입장에서는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없다.

말을 하지않고 가만히 있자니 상대방의 주장을 수용하는 형국이되고 그렇다고 같이 싸우자니 상대가 내 말을 들어줄 것 같지도 않고 정말 진퇴양난의 난처한 입장이 아닐수 없다.

이런 경우 가장 좋은 말은

"경찰서에 신고하여 처리하자."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면 될 것 아닌가."

위의 딱 두마디로 모든 상황을 정리시킬수 있다. 그리고는 바로 국번없이 112 또는 119로 전화하여 경찰이 오기까지 아무런 이야기 할 필요없이 상대방을 피하여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차안에서 기다린다.

요즘에는 사고신고를 받게되면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파출소에서 112 순찰차량이 불과 수 분이면 현장으로 출동하여 처리해 준다. 상대방이 큰소리 치거나 억지주장을 하는 경우에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은 맞대응 하지 말고 경찰서나 보험회사의 도움을 청하여 받는 것이 정말 좋은 교통사고 처리방법이다.